

광주지방법원 2017. 6. 2 선고 2016가단39250(본소), 2016가단39267(반소) 판결

[매매대금 · 청구이의]

전 문

원고(반소피고) 1. A

2. B

피고(반소원고) C

변론 종결 2017. 4. 21.

판결 선고 2017. 6. 2.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960,000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64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5. 10. 14.부터 2017. 6.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D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05가소211524 매매대금청구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14.부터 2017. 6.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3.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2항 기재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1,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10. 14.부터 2017. 6.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정지한다.
4.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 피고(반소원고)의 주위적 반소 청구, 나머지 예비적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80%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6. 제1,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A에게 14,400,000원 및 그 중 4,800,000원에 대하여, 원고 B에게 9,600,000원 및 그 중 3,200,000원에 대하여 각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주위적으로, D의 피고에 대한 2005. 7. 18.자 광주지방법원 2005가소211524 매매대금 청구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예비적으로, D의 피고에 대한 2005. 7. 18.자 광주지방법원 2005가소211524 매매대금 청구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8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광주지방법원 2005가소211524 매매대금 청구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D는 2000. 7. 14. 피고에게 나주시 E 임야 3,802㎡ 중 9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72,0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였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00. 9.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D는 피고를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청구원인 중 기타 보충할 내용에 '임야에 묘지 7기를 파묘를 다원하였으나 1기만을 해결치 못하고 그 많은 경비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니 해결된 부분만 처리원합니다.'고 기재하였으며, 2005. 7. 18.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광주지방법원 2005가소211524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이 내려져, 2005. 10. 28. 확정되었다.

다. D는 2005. 11. 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A과 자녀인 원고 B가 있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을 위하여 2015. 10.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14,400,000원(= 4,800,000원(8,000,000원 × 3/5 상속지분) + 9,600,000원(4,800,000원 × 20% × 10년1)), 원고 B에게 9,600,000원(= 3,200,000원(8,000,000원 × 2/5 상속지분) + 6,400,000원(3,200,000원 × 20% × 10년2)) 및 위 각 돈에 대한 2005. 10. 1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겸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전부에 대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3. 10. 제6차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그 주장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위적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의 항변 겸 예비적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은 72,000,000원이었고, 피고는 당일 계약금으로 7,000,000원, 2000. 8. 1. 중도금으로 30,000,000원, 잔대금 32,600,000원을 2000. 8. 25.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상 특약사항으로 D가 묘 3기를 파묘하여 이장하면 1기당 800,000원으로 하여 2,400,000원을 마저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여전히 묘 2기가

남아있으므로 피고는 8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남아있을 뿐이다.

2) 판단 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은 "이행권고결정은 피고가 2주 내에 이의하지 아니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취지로 규정하면서도 한편 같은 법 제5조의8 제3항은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이행권고결정 이후의 청구권의 소멸이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사유뿐만 아니라,

이행권고결정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그 이의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당사자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8,000,000원이

미지급되었다는 주장이고, 피고는 2,400,000원을 미지급하였을 뿐이며, 이는 묘 3기가 이장되면

지급하기로 특약하였는데, 묘 2기가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특약에 따라 위 미지급한 돈 중에서도

1,600,000원은 지급할 수 없어, 결국은 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만 남았다는 것이다. 비록

피고의 위 주장은 이행권고결정 이전의 청구권 행사를 저지하는 사유에 해당하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도 여전히 주장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2 내지 6,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D에게

2000. 7. 14.부터 2000. 9. 21.까지 합계 69,6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에 몇 기의 묘가 남아있는지와 관련하여,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1기의

묘가 남아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원고와 피고 사이에 묘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부분은

그 형상 및 위치에 비추어 보았을 때 묘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결국 피고는 1,600,000원(특약에서 정한 묘 2기의 이장에 대한 대가)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지급명령에 대한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제기된

청구이의의 소에서 지급명령 발령 전에 발생한 청구권의 일부 불성립이나 소멸 등의 사유로

청구이의가 일부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이전부터 청구이의의 사실심판결 선고시까지 그

청구권에 관한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기간 위 안에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위와 같은 법리는 이행권고결정에도 그대로 적용함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는 D의 상속인들인 원고 A에게 960,000원($= 1,600,000\text{원} \times 3/5$), 원고 B에게 640,000원($1,600,000\text{원} \times 2/5$)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05. 10.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인정된 부분을 초과하는 범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 피고의 주위적 반소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반소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보라

- 1) 이행권고결정이 송달된 다음날인 2005. 10. 14.부터 2015. 10. 13.까지의 기간
- 2) 이행권고결정이 송달된 다음날인 2005. 10. 14.부터 2015. 10. 13.까지의 기간